



國際認證授乳相談家(IBCLC) 資格證 所持者 業務 範圍

국제인증수유상담가(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IBCLC®) 자격증 소지자는 모유수유(모유 영양 섭취) 그리고 모유 생성 분비에 대한 특화된 지식과 임상 전문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國際授乳相談家試驗院(International Board of Lactation Consultant Examiners®, IBLCE®)에서 그 자격을 인증 받는 자이다.

이 업무 범위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받고 그래서 종사할 권한이 있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 업무 범위의 목적은 모든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들이 안전하며 만족할 만한 그리고 근거에 입각한 관리를 제공할 것을 증진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자격이므로, 이 업무 범위는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는 어떠한 국가나 여건에서도 적용된다.

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전문직의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전문직 행위 규약 그리고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업무에 대한 임상 적격에서 정의된 범위 안에서 일함.
2. 모유수유 가정을 보살필 때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상세 내용 개요에 정의된 학과들에 입각한 지식과 근거를 통합함.
3. 각각의 地政學的 지역 또는 환경의 법적 체제 안에서 일함.
4.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을 유지함.

I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보호, 증진,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영·
2. , ,
3. ,
4. 수유를 보호, 증진, 지지하는 정책 개발을 도모함.

II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의뢰인 및 가족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 모유수유의
2. (), ()
3. ()
4. () , ,
- 5.
- 6.
- 7.
- 8.
- 9.
10. 의뢰인, 보건의료인 및 공동체 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성인 교육 원칙을 사용함.

IV.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의뢰인과 유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1. 제공한 서 , ,
2. 필요에 따라 의뢰인의 주요 보건의료인, 보건 시스템 및/또는 적절한 복지서비스에 정직하고 완벽하게 보고함.

V.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의뢰인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1. 사생활 및 존엄성, 기밀성을 존중함.

VI. 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합리적인 注意(reasonable diligence)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1. 증거에 입
- 2.

3. 다른 보건의료인 및 지역사회 지원 단체에 필요한 의뢰를 함.
4. 조화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팀의 다른 구성원과 공동으로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일함.
5. 본인의 국가 또는 본인이 종사하는 관할권의 형법에 따라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
6. 다른 전문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
7. 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에 보고함.